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0월 22일

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행정안전국장 유 익 수

나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과 상충·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,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「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작성례에 따라 「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복무선서 및 책임완수,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제4조)
- 당직 및 비상근무, 겸임근무,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8조)
-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연가계획 및 허가,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, 제11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현 명 속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행정안전부 「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작성례에 따라 구미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과 상충·중복되는 조문을 삭제, 정비하여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간단, 명료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